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행복knowhow 연금예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원리금 지급기준 명확화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『행복knowhow 연금예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『행복knowhow 연금예금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『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』 및 『<u>거치식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</u>』을 적용한다.</p> <p>제 2 조 예금과목 (생략)</p> <p>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</u>으로 한다.</p> <p>제 4 조 ~ 제 6 조 (생략)</p> <p>제 7 조 원리금 지급기간 이자지급 ① ~ ④ (생략) (신설)</p>	<p>『행복knowhow 연금예금』 특약</p> <p>제 1 조 적용범위 “행복knowhow 연금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『<u>예금거래 기본약관</u>』 및 『<u>거치식예금 약관</u>』을 적용한다.</p> <p>제 2 조 예금과목 (좌동)</p> <p>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</u>로 한다.</p> <p>제 4 조 ~ 제 6 조 (좌동)</p> <p>제 7 조 원리금 지급기간 이자지급 ① ~ ② (좌동) ③ <u>고객이 지정한 원리금 지급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고, 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합니다.</u> <u>③ ~ ④ 항을 ④ ~ ⑤ 항으로 변경 (내용 변동 없음)</u>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개인사업자 문구 추가</p> <p>원리금 지급기준 명확화</p>